

의안처리상황표

번호	170236-1
건명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서면질문서
질문의원	유정복의원
질문대상자	통일부장관
질문일자	2005-06-08
이송일자	2005-06-08
답변예정일	2005-06-18
답변일자	2005-06-20
비고	

접 수	의안과 - 56기 (2005. 6. 8. 15:56)
-----	----------------------------------

수 신 : 의 장

제 목 :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서면질문서

국회법 제1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서를 제출합니다.

1. 질문대상자 : 통일부장관
2. 질 문 서 : 붙 임(3부)

2005년 6월 7일

제 출 자: 유정복



						의 장
담당자	담 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노재석
조남희	오세일	이수용	전결			

서면질문서

질문의원명	유정복	소속	행정자치위원회
질문대상자	통일부장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개최 5주년이 되었고, 그동안 정상회담 재개논의가 수시로 제기되어왔습니다. 최근에 북핵위기 해결 및 남북관계 개선 등의 필요성에 의해 정상회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께서는 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서 APEC에 김정일 위원장을 한국으로 초청하고 싶다고 하였고, 수시로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하셨습니다.

시중에서는 현 정부가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 후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호남에서조차 지지율이 떨어지는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하여 무슨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가 남북정상회담 성사라고 하는데, 장관께서 이에 대해 솔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정부는 투명성과 국민의 참여를 대북정책의 원칙으로 삼는다고 말해왔습니다. 지난 김대중 정부처럼 은밀히 뒷거래를 통한 정상회담 추진은 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장관께서 무리를 해가며 북한 행사에 참가하려는 것은 이번 6·15 평양축전 방북계획이 정상회담 문제를 의논하거나 대통령의 특별메세지를 전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정상회담을 추진하더라도 국민들에게 필요성과 배경을 충분히 설명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 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국회

수신자 대통령(국무총리, 통일부장관)

(경유)

제목 서면질문서 이송

유정복의원으로부터 붙임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국회법 제 1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하니 동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게재할 답변서와 기타 답변관계자료를 구분하여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답변서 4부)하여 주시고,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원	질문명	질문대상자	질문일자	비고
유정복의원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에 관한 질문	국무총리	2005. 6. 8.	
유정복의원	한미정상회담에 관한 질문	통일부장관	2005. 6. 8.	
유정복의원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질문	통일부장관	5005. 6. 8.	
유정복의원	북한과의 어로협정체결에 관한 질문	통일부장관	2005. 6. 8.	

붙임 질문서 각 1부. 끝.

국회의장

행정주사 조남희 행정사무관 오세일 의안과장 이수용
전결(6/8)

협조자

시행 의안과 - 5615 (2005. 6. 8.) 접수

우 150-70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본관 6층 601호) / <http://www.assembly.go.kr>
전화 (02) 788-2197 전송 (02) 788-3383 / baekjo@assembly.go.kr / 공개

대한민국정부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 전화(02)720-2106, 3703-2322~4 / 전송 (02) 3703-2424
 통일부 정책홍보관리실 재정기획관실 재정기획관 이충원 담당자 홍명화

문서번호 재정기획관실-137

시행일자 2005. 6. 18.

받음 국회의장

참조 의사국장

선 람	국 장	노재석	지 시		
	일 자	05. 6. 20.		결 재	과 장
접 수	시 간	10:10	공 람		단 장
	번 호	6144			
처 리 과		의안과			
담 당 자		조남희			협 조
심 사 자			심 사 일		

제목 서면답변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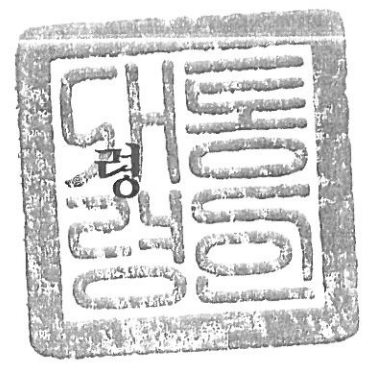
1. 국회 의안과-5675(2005. 6. 8) 관련입니다.

2. 국회법 제122조 규정에 의하여 유정복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서면답변서 4부. 끝.

대 통

330



답 변 서

○ 질 문 : 유정복 의원

○ 근 거 : 헌법 제82조, 국회법 제122조

○ 질문내용 : 붙임

○ 답 변 : 통일부 장관 정동영(서명) 代 이복근

○ 답변내용 : 붙임

1. 장관께서는 이번 6.11 한·미정상회담의 배경과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울러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방침은 무엇인지?

- 한·미는 금년 11월 부시 대통령의 부산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 최근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정세를 감안할 때 올해 중반 정도에 정상회담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한·미간 상호 공감대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되었음.
- 우리측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향후 북핵문제 해결 방향에 대한 한·미간 공통인식을 심화시키는 계기로 삼는다는 입장으로 임했으며,
 -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원칙을 재확인한 것은 의미있는 성과라고 평가함.
- 또한, 양 정상은 6자회담 재개시 실질적 진전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전개할 것임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다자안전보장과 실질적 지원, 미·북간 '보다 정상적인 관계'가 가능할 것임을 재확인한 것은
 - 북한이 6자회담 참여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시의적절한 메시지가 되었다고 봄.

<유정복 의원, 서면질문>

2. 시중에서는 현 정부가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 후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호남에서조차 지지율이 떨어지는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하여 무슨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가 남북정상회담 성사라고 하는데, 장관께서 이에 대해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정부는 남북관계를 어떠한 정치적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남북정상회담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의 합의사항으로 아직 유효하며,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유정복 의원, 서면질문>

4. 장관께서 무리를 해가며 북한 행사에 참가하려는 것은 이번 6.15 평양축전 방북계획이 정상회담 문제를 의논하거나 대통령의 특별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은 아닌지?

- 이번 행사에 당국대표단을 파견하는 것은 그동안 민간급에서 참여해 온 6.15 통일대축전에 6.15 공동선언 서명자인 남북 당국이 참여하여 함께 기념하기 위한 것임.
- 남북정상회담은 6.15 공동선언에서 이미 합의한 사항으로서, 합의한 대로 개최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임.

<유정복 의원, 서면질문>

5. 정상회담을 추진하더라도 국민들에게 필요성과 배경을 충분히 설명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 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는지 ?

- 남북정상회담은 6.15 공동선언에서 이미 합의한 사항으로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임.
 - 또한, 정상회담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 모두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함.
- 정상회담을 포함한 대북정책에 대해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바탕위에서 투명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참여 정부의 기본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